

특례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 1994년 7월 9일 양주군수가 경기도와 관계기관에
기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과 같이 장흥면 주민이 요구하는 자연부락 장포동, 이안동
과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인 송추유원지 외곽지역으로 변경 설치도록 하고

2. 본 지역은 각종 행위제한지역인 그린벨트지역, 군사시설 보호구역, 국립공원지
역과 T·V 난시청 지역 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이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피해의식이
팽배해 갈 뿐만 아니라 제2의 생존권 박탈이라고 결사반대 하므로 송전탑 설치 변
경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건의합니다.

【 7 】 군정질문에 따른 현장확인의 건

제안년월일 : 1996. 8. 23.

제 안 자 : 김광배의원외 2인

제안이유

군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코자 함.

주요골자

○ 기간 : 1996. 8. 28(수) 1일

○ 대상 : 2개소

- 주내 ~ 가남간 도로 확·포장 공사
- 덕도리 군유지